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 40호

세운6-3-1,2구역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0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0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89호(2014.11.13.)로 세운6-3-1구역과 6-3-2구역 통합 변경결정 되어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394호(2017.11.9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86호(2019.3.7.)로 촉진계획 변경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27호(2015.04.21.)로 사업시행인가 및 2017.12.29. 및 2019.3.19.자 사업시행변경 (경미한)인가 처리된 우리구 을지로4가 261-4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1,2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,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하고 공사완료 고시합니다.

2019년 4월 1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1,2구역 재개발사업
2.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261-4번지 일원 / 14,707.3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더유니스타(주) (대표이사 조형일)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0, 315(저동2가)
4. 준공인가일 : 2019. 4. 12.
5. 준공인가 내역
 - 가. 토 지

시행면적(㎡)	대지면적(㎡)	정비기반시설(㎡)			비 고
		합 계	도 로	녹지	
14,707.30	10,032.00	4,675.30	4,130.50	544.80	

나. 건축시설

구 분	규 모	비 고
건축면적	6,359.04㎡	건폐율 : 63.39%
연 면 적	146,675.88㎡	용적률 : 925.57%
층 수	지하8층, 지상20층	높이 : 89.7m
용 도	업무시설,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	

6.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
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 처리된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신고 또는 허가사항은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본 사업 준공인가에 따라 준공검사·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
7. 관련도서 : 생략(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☎3396-5753) 비치도서와 같음